



천주교 올버니 교구

교회 인사 행동 강령

본 천주교 올버니 교구 **행동 강령**(이하 “**강령**”)은 표준 방침을 수립하고 교회 인사의 봉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모두에게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증하는 것이 교구의 사명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해야 하며,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은 항상 우리가 공언하는 믿음과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에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마 5: 16).

본 **강령**은 다음의 중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교회의 사명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교회 종사자들을 통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간증 증진,
- 어린이, 취약한 성인 및 우리가 교류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호, 육성 지도,
- 교회 인사의 효과적이고 안전한 섬김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 제공,
- 개인의 안녕과 전문적인 역량 증진, 및
-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관계 구축

본 **강령**은 교회 역할과 관련한 교회 인사 행동에 적용된다.

교회 인사란 다음을 의미한다.

- 지위 고하를 막론한 모든 직원
- 모든 자원봉사자

아동과 접촉하는 모든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자원 봉사 활동이나 피고용전에 안전 환경 프로그램을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애플리케이션,
2.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인식 교육,
3. 교구장이 승인한 신원 조사,
4. 윤리 강령 서명,
5. 기술 및 소셜 미디어 방침 서명

미성년자나 취약한 성인과 함께 일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18세 이하의 교회 인사는 다음의 아동, 기타 다른 청소년 또는 취약한 성인과 상호작용하는 청소년 직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행동 강령 준수에 동의하여야 한다.

통칙

1. 교회 인사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 교회의 사명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어야 한다.
2. 교회 인사는 높은 윤리 의식과 진실성을 보여야 한다. 교회 인사는 업무에 수반되는 책임과 신뢰에 대해 자각하고 적절한 경계를 유지함으로써 이 자각을 드러내야 한다. 관계는 성직자의 토대이며 가톨릭 생활의 중심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관계는 우리가 섬기고 양육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우리의 진실된 존경과 연민을 보여주며 교회에 대한 존경을 키워준다.
3. 교회 인사는 그들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안녕에 대한 책임이 있다. 또한 전문적인 역량을 유지하고 특정 역할에 맞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전문적 수준을 충족할 책임이 있다. 교회 인사는 그들의 개인적 또는 전문적 분야에서 관심이 필요할 때는 필요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주요 용어

“**교구**”는 14개 국가 및 약 30만명 천주교 신자를 포함하는 천주교 올버니 교구를 의미한다.

“**성직자들**”은 천주교 교회의 예식을 집행하는 주교, 사제, 부제 등 서품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성직자**”는 성직자들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행동 강령**”은 교회성직자 행동 강령, 교회 인사 행동 강령 및 청소년 자원 봉사자 행동 강령 등 해당되는 행동 강령을 의미한다.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

“패리쉬”는 교구에 의해 천주교로 공인된 교구 지역 내의 패리쉬를 의미한다.

“학교”는 교구의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패리쉬 기반의 유아 센터를 의미한다.

“세미나리” 또는 **House of Discernment**는 Saint Isaac Jogues House of Discernment를 포함한다.

“비전문적”은 특정 직종에서 요구되는 기준보다 낮거나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취약한 성인”이란 실제로 때때로 위법 행위를 이해하거나 원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된 병약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핍이 있는 또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의 사람을 의미한다.

윤리 규범

1.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상호 작용

1.1 교회 인사는 전문적인 관계에서는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1.2 교회 인사는 타인과 공손하고 전문적으로 관계를 맺을 것이며, 교구 및 교회를 섬기는 타인과의 협력하고 협조한다.

1.3 교회 인사는 타인의 신체적, 심리적, 성적 괴롭힘에 관여해서는 안되며,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그러한 괴롭힘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괴롭힘은 한 번의 사건이거나 또는 그 목적이나 결과가 적대적이거나 불쾌하며 또는 위협적인 업무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면 지속적인 행동의 패턴일 수도 있다.

1.4 교회 인사는 소명 의식에 따라 청렴하게 행동하며 공손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1.5 교회 인사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타인을 착취하여서는 안 된다.

1.6 교회 인사는 어떤 포르노 이미지를 취득, 소유, 배포 또는 열람할 수 없다. 교회 인사는 교구, 패리쉬 또는 학교 내에 포르노 자료를 열람하거나 포르노 자료를 이 장소들에 가져와서는 안 된다.

1.7 교회 인사는 알코올이나 기타 약물을 불법적으로 소지, 사용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된다. 교회 인사는 직무 수행 시 불법 약물이나 안정적인 기능이나 건전한 판단을 저해하는 알코올 혹은 의약품 등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1.8 교회 인사는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1.9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문제들에 관한 적절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동안, 교회 인사는 대중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천주교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대중 커뮤니케이션은 공개 포럼에서 제공되거나 일반 청중에게 배포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광범위한 배포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커뮤니케이션(예를 들어, 대중 연설, 게시 기사, 미디어, 소셜 미디어 게시물 또는 블로그)도 포함된다.

1.10 교회 인사는 민감한 정보는 신중하고 기밀성 있게 취급하여야 하며, 기밀 정보를 받을 자격이 없는 타인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1.11 교회 인사는 전문적이며 적절하고 각자의 역할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한다.

2.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행동

2.1 교회 인사는 신중하고 상식적으로 미성년자를 대하여야 한다.

2.2 교회 인사는 미성년자를 대할 때 자신의 취약성과 타인의 취약성에 대해 알아야 한다. 교회 인사는 합리적인 사람이 부적절하다고 오해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하여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나 취약한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팀 단위로 접근하여야 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2.3 교회 인사는 긴급 상황 및 상호 작용이 부수적이고 연장되지 않는 경우와 같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혈연 관계가 없는 미성년자와 단 둘이 있는 경우를 피해야 한다. 혈연 관계가 없는 미성년자와 일대일 미팅은 공공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이 좋으며 또는 만약 상황이 적절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 창문이나 열린 문을 통해 타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2.4 미성년자와의 신체적 접촉은 일반적이며 성적이지 않으며 적절해야 한다. *허용되는 신체적 접촉의 예*는 다음과 같다.

- a. 잠깐의 사이드 허그나 어깨 동무
- b. 어깨 또는 등 윗부분을 가볍게 두드리기,
- c. 악수 또는 “하이 파이브”,
- d. 손 잡고 기도하기,
- e. 어린 아이 및 휘청거리는 아이와 걸을 때 손을 잡아 주는 것 및
- f. 손 머리 어깨 또는 팔을 가볍게 잡는 것.

*허용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의 예*는 다음과 같다.

- a. 간지럼
- b. 마사지

c. 앞 또는 뒤를 오래 껴안기 및

d. 가슴이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및

e. 키스

2.5 질병 등으로 인해 외출할 수 없는 사람이나 미성년자를 위해 봉사하는 교회 인사는 단체로 혹은 안전한 환경 만들기 훈련을 받은 다른 성인과 가능한 한 함께 일하도록 권장된다.

2.6 교회 인사는 미성년자와 함께 일하는 경우 알코올, 담배 또는 불법 약물의 사용이 금지된다. 성찬식, 예배, 기도 등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그외 미성년자에 대한 알코올 또는 담배 제공은 금지된다.

2.7 교회 인사는 문서화된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혈연 관계가 없는 미성년자와 차량을 타고 이동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 그룹이 오직 한 명의 성인과 함께 이동하는 경우, 돌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충분한 운전자를 확보해야 한다.

2.8 교회 인사는 혈연 관계가 없는 미성년자와 숙박 시설(침실, 호텔, 텐트, 캠퍼, 침대 등)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숙박시설이 개방된 공간(김나지움, 야영장, 교실, 모임 공간 등)에 있는 경우, 적절한 감독 제공 및 성별 및 성인/미성년자에 따른 합리적인 분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2.9 모든 야간 이벤트의 경우 18세 이상의 성인은 안전 관리 프로그램 교육을 받을 것이 요구된다.

2.10 교회 인사와 혈연 관계가 없는 미성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전문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되어야 한다. 교회 인사는 혈연 관계가 없는 미성년자와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에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교구 소셜 미디어 방침을 준수하는 전자 기기 또는 웹 기반 미디어 사용을 통한 커뮤니케이션도 포함한다.

a. 교회 인사는 혈연 관계가 없는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해당 미성년자 또는 취약한 성인이 발송하거나 수신한 사적 전자 또는 인쇄된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사적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교회 인사는 다른 교회 인사와 해당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공유하여야 한다.

b. 회의 장소, 시간 또는 기타 행정 사항과 관련하여 청소년 단체에 발송된 것들처럼, 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경우에는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c. 일부 교회 인사는 학교, 패리쉬, 또는 교구 컴퓨터나 기타 다른 커뮤니케이션 장비를 발급받았으며 이는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모니터링 된다.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여 혈연관계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보내거나 받은 전자 커뮤니케이션은 본 강령의 목적에 기해 사적인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11 교회 인사는 미성년자와의 상호 작용 중 무력, 모욕, 비하, 욕설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자기 방어가 필요하거나 미성년자나 취약한 성인이 자신 또는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적절한 무력은 사용 가능하다.

2.12 교회 인사는 혈연 관계가 없는 미성년자와 고가의 또는 과도한 선물을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 일반적인 패리쉬 프로그램 및 학교의 방침에 따라 미성년자와 교회 인사간의 적당하고 적절한 선물 교환은 허용된다.

3. 상담과 관련된 행동

3.1 상담이나 영적 방향과 관련된 경우, 교회 인사는 모든 관련된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2 서로 관계가 있는 두명 이상의 사람에게 상담이 제공되는 경우 교회 인사는 다음을 하여야 한다.

- a. 관계의 본질 명확화
- b. 잠재적인 이해 충돌 확인
- c. 갈등을 제거하거나 관리하는 방법 논의

3.3 교회 인사가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는 전문성, 교육, 인증 또는 전문 라이선스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3.4 교회 인사는 상담 관계에서 명확하고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다.

3.5 상담 세션은 적절한 환경과 시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카운슬러와의 관계에 관하여 상담자를 혼란하게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간에 세션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3.6 상담이나 영적 방향 진행 중 신체적 접촉은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지양하여야 한다.

3.7 상담 종료 후 교회 인사는 상담자의 지속적인 케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4. 목회 상담 관계의 비밀 유지

4.1 교회 인사는 상담 시 비밀 유지의 성격과 제한에 대하여 각 해당자와 논의하여야 한다.

4.2 교회 인사가 종교적 또는 영적 조언, 원조 또는 위로의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기밀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공개될 수 있다.

- a. 상담자의 서면이며 내용 설명을 들은 후의 동의가 있는 경우
- b. 상담자 또는 타인에게 명확하고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이 경우, 교회 인사는 영향을 받는 당사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만을 공개하도록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중하다면 교회 인사는 정보를 공개하기 이전에 상담자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공개에 대해 알려야 한다)
- c. 미성년자 또는 취약한 성인의 건강 안전 또는 행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 그리고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시민 당국에 기밀 정보의 공개는 미성년자 또는 취약한 성인의 건강, 안전 또는 행복에 필수적인 경우.(이 경우, 교회 인사는 공개 전에 미성년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해 시도하여야 하며 해당자의 건강, 안전 또는 행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을 공개하도록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 d. 다른 전문가와의 상담이 상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이 경우, 교회 인사는 정보 공개 전 상담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기 위해 시도하여야 하며, 도움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만을 공개하도록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하며, 다른 전문가로부터 우리 측 기밀 유지 표준에 따라 구속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을 받아야 한다)
- e. 교회 인사 구성원이 법적 절차 중 피고인으로 변호를 위해 기밀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이 경우, 교회 인사는 변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만을, 민법 및 교회법에 따라 허용된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또는
- f. 민법 또는 교회법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4.3 교회 인사는 상담 서비스와 관련된 노트, 파일 또는 전자 기록의 기밀성을 보호하여야 한다.

4.4 전문적인 목회상담 상호작용으로부터 얻은 지식은 개인의 정체성 및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만 강의, 저술, 또는 기타 공공 프리젠테이션에서 신중하게 사용될 수 있다.

5. 기밀성 기록 및 정보

교회 인사의 구성원으로 교구, 구성원 패리쉬들 및 소속 기관, 그 담당자, 에이전트 또는

직원, 성직자 및 일반 대중 또는 다른 단체의 구성원, 교구민과 관련한 기밀이며 개인적이고 민감한 정보에 대하여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직원 및 자원봉사자는 다음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5.1 모든 교구, 패리쉬 또는 천주교 학교 기록은 각 해당 단체의 독점적인 재산이며 교구 구내로부터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

5.2 기밀이며 개인적인 또는 민감한 정보는 교구, 패리쉬 및 소속 기관에서 비밀, 개인적인 또는 민감한 파일에 보관하는 정보 또는 교구, 패리쉬 및 소속 기관 또는 기타 다른 담당자, 에이전트 고용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보; 연방법, 뉴욕주법에 따라 기밀로 인정된 정보 및 재무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5.3 기록물에는 모든 기록 정보, 문서, 서신, 지도, 책, 사진, 영상, 영화, 녹음, 테이프, 전자 형식으로 생성된 기록물, 이메일 및 미디어 형식에 상관없는 모든 기타 다른 기록물이 포함된다.

5.4 교구, 패리쉬 또는 천주교 학교 방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기록도 접근, 공유, 제거, 파기, 저장 또는 다른 미디어 형식으로 전송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폐기될 수 없다.

5.5 기밀 기록은 사생활 보호 목적으로 공공 기록물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기밀 기록에는 성찬식 기록, 성직자 파일, 인사 기록 및 교구, 패리쉬 또는 천주교학교에 대한 개인 재정 공헌 기록과 재정 기록 또한 포함된다.

5.6 기밀 기록으로부터 통계 정보를 취합하고 공표할 경우 개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7 교구, 패리쉬 또는 기관에 국한되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 이유 없는 개인과 비밀의, 개인적인 또는 민감한 문제의 논의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5.8 교구, 패리쉬 또는 천주교 학교 이메일 계정을 발급받은 교회 인사는 가능한 한 성직자 직무 수행 중에만 발급된 계정을 사용해야 한다.

5.9 언급한 지침의 위반은 종료 등 징계 사유로 간주될 수 있다.

6. 관리책임

6.1 교회 인사는 모든 재정적 물질적 자원에 대하여 책임감 있는 관리책임을 행사하여야 한다.

6.2 교회 인사는 교회의 자금이나 자료를 개인적인 사용 또는 목적으로 유용하지 않는다.

6.3 교회 인사는 책임을 지는 모든 자금과 물질적 자원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시스템과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구 재정 지침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7. 이해 충돌

7.1 교회 인사는 합리적 인식 하에 개인 종교, 정치 또는 사업적 이익을 위해 교회에서의 지위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만 한다. 교회 인사는 이해 충돌이 있을 만한 상황을 피해야 한다. 이해 충돌이 나타나는 것조차 청렴성과 전문적인 수행 여부 문제가 될 수 있고 지양되어야 한다.

7.2 교회 인사가 교구, 패리쉬, 천주교 학교 또는 그외 교구 기관과 정기적 또는 상당한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 기관 또는 개인과 소유권 이해관계가 있거나, 투자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는 보상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이해 충돌은 발생할 수 있다.

7.3 지양되어야 할 이해 충돌 상황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교회 인사가 현재 직업 또는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부당한 편견을 가지고 행동하거나 편파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 b. 개인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신뢰를 침해하는 경우; 그리고
- c. 과도한 물질적 가치의 선물을 받는 경우

7.4 교회 인사는 가족을 제외한 패리쉬 또는 천주교 학교와 관련된 사람에 대한 수탁 의무나 재정적 책임을 인수 고려시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그러한 의무나 책임을 인수하기 전 목사나 교회 관리자와 상담하여야 한다.

7.5 교회 인사들은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이해 충돌을 공개하여야 한다. 문제 해결 시 사역이나 봉사를 받는 사람의 보호에 항상 최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8. 위법 행위 신고

8.1 교회 인사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거나 또는 비전문가적인 행동을 감독이나 기타 적절한 교회 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8.2 교회 인사는 범죄로 체포되거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관리자와 인사 및 안전 환경부서에 자진 신고하여야 한다.

8.3 미성년자가 학대 또는 방치되고 있거나, 학대 또는 방치되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교회 인사는 그들의 신념의 근거로 즉시 다음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a. 적절한 시민 당국

b. 인사 및 안전 자원 책임자(또는 기타 적절한 교구 관계자) 및

c. 부모 또는 보호자, 단 그렇게 하는 것이 미성년자 또는 취약한 성인이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되게 하지 않거나 혹은 행정 당국의 지시가 없는 경우.

8.4 아동음란물의 존재가 의심되는 경우 적절한 행정 당국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8.5 본 표준의 미준수 시 최대 해고까지의 징계를 포함한 시정 조치가 내려진다.

이 윤리 강령은 어떠한 관련 법, 지침, 정책 또는 규정에 명시된 어떠한 의무도 폐기하거나 대체하지 않는다.

이름: _____ 날짜: _____

서명: _____

학교/패리쉬/기관 이름 및 위치: _____

해당사항에 체크하세요: 직원 자원봉사자